

##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

# 우리 동물병원에 대한 비방글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면?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겸 변호사  
today-we@hanmail.net

N포털사이트의 인터넷의 반려동물 애호 카페 회원인 이비방씨는 자신의 반려견 멩밍이에게 혈뇨 증상이 나타나자 ‘김명의동물병원’을 찾았다. 한방진료를 전문으로 하였던 김명의 수의사는 멩밍이의 병명을 ‘하초습열’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멩밍이의 증상은 더 악화되기만 했다. 결국 이비방씨는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는 방광염과 결석 진단을 내렸다.

이비방씨는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김명의 수의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비방씨의 비방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기 시작했다. 여러 반려동물 애호 카페에 “용산의 김ㅇㅇ동물병원, 오진을 부정한다.”, “김 XX동물병원, 사과도 안하고 책임질 줄 모른다.”식의 비방글을 각 카페의 ‘나쁜 동물병원’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정확하게 동물병원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글이었다.

이런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방글의 삭제 청구

김명의 수의사에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은 비방글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 업체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명한다는 것은 침해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침해사실이 있다고 의심될 정도로만 증명하면 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인터넷업체는 해당 글을 삭제하여야 한다. 만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비방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이비방씨의 글 때문에 김명의 수의사의 병원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비방씨에게 병원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병원의 매출감소가 이비방씨의 글 때문이라는 점을 김명의 수의사가 증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방글과 매출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될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비방씨의 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최근 경향을 보면 위자료로 인정하는 액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가 정말로 오진을 한 것이고, 이비방씨가 오진 사실을 올린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위자료가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불문하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침해받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나 형사 처벌의 형량이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자.

김명의 수의사는 이비방씨를 상대로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배상만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따로 규정을 둔 것이다. 적당한 처분은 판결문을 게재하는 등 상황에 맞게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 게재금지가처분 신청

김명의 수의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도 임시로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비방씨가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비방씨가 글을 내리고 다시 게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만일 이비방씨가 글을 내리지 않거나 다시 올리는 경우 김명의 수의사에게 하루당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진실한 사실을 올리는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비방글을 올리는 모든 경우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일까?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법원이 볼 때, 이비방씨가 김명의 수의사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반려동물 애호가들에게 나쁜 수의사를 경계하겠다는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만일 이비방씨가 허위의 사실을 올린 경우라면?

김명의 수의사는 제대로 치료를 하였으나, 이비방씨가 김명의 수의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김명의 수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

추가로, 만일 이비방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언론에 기사를 실은 것이었다면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엔 마스크에 수의사들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보도를 정정한다는 기사를 내게 하는 것이다.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영업방해죄도 적용된다. 진실한 사실을 올리는 경우는 영업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을 올리는 경우는 영업방해죄도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다.

## 예방이 최선

모든 세상사가 그렇지만 축주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감정싸움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을 보면 서로 다투는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성향의 축주들을 상대해야 하는 수의사들의 업무를 생각하면 실력 있는 수의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의술만이 아닌 듯싶다. ☺